

『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28일

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,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, 제10조, 제34조, 제35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,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
- 안 제3조 기능은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
- 안 제5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 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
-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,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주민참여와 시장의 지도점검, 지원 등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,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